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9. 27 선고 2017가단1057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9. 6.

판결 선고 2017. 9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립된 별지목록2 기재 건물의
별지도면표시 ⑤, ⑥, ⑨, ⑩, ⑤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(ㄱ) 표시부분 19m'를 철거하고, 위(ㄱ)
표시부분 토지 19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준희

별지